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3-6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8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정이유

마포구의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(안 제1조)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나. 기금의 조성(안 제2조)

- 기금은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금,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,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함

다. 기금의 용도(안 제3조)

- 기금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설계비, 건축비 및 중앙도서관 건립 관련 부대비용,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용도에만 사용함

라. 위원회 설치 및 구성(안 제4조)

-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

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됨

마. 위원회 기능(안 제5조)

-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조성, 적립,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함

바. 의견청취 등(안 제13조)

-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

사. 기금의 관리·운용(안 제15조)

-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·운용하며,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여야 하고,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

아. 기금의 존속기한(안 제16조)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,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 연장 가능

3. 주요 토의과제

“ 없음 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- 2)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3) 「지방재정법」 제89조~제95조 및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3. 7. 4 ~ 7. 24 실시

-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 요약 및 검토

→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완료 : 교육지원과-7935(2013.08.16)

의견제출자	제출의견 (요약)	조치내용 (검토의견)
<p>발전소 지하화 주민협의체 위원 김종선</p>	<p>○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 시설은 필수이나 발전소 재원의 절반정도는 서강·합정 지역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</p> <p>○ 발전소 지원금은 전액을 대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 조례화하여야 하며 주민들에게 자세한 설명 필요</p> <p>○ 입지 역시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건립 하는 것이 설득력 있을 것임</p> <p>○ 위 시설 건립은 바람직하나 재원 및 입지는 신중하게 재고해 줄 것을 요망</p>	<p>▣ 조례 반영 해당사항 없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발전소 지원금 중 본 기금 조례의 재원으로는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의 건축비(법정 외)로 지원되는 130억 원을 제외하면 법정 특별지원금 중에서는 일부만 소요 되는 것이며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법정 특별지원금은 서강·합정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곳에 쓰일 예정임. ○ 본 기금 조례의 재원은 비단 발전소 지원금만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며 기금의 50% 상당은 국·시비 보조금, 주차장 특별회계, 특별교부금 등의 발전소 지원금 외의 재원으로 구성됨. ○ 지원금은 『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』에 의하여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 부터 반경 5Km 이내를 범위로 하고 있어, 현 위치의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원금 사용 가능 ○ 또한 서울화력발전소 지상부 공원화 및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등 최소 1,000억원에서 최대 2,000억원 상당의 지역투자 효과와 발전소내 공유재산(시유지, 구유지)에 대한 토지교환(약2,200㎡) 부지 활용 주민편익시설 조성검토 중임. ○ 공공시설 건립에 있어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은 부지매입비로서 마침 옛 구청사 부지가 활용 가능한 상황이라 부지 매입에 대한 부담 없이 이와 같은 시설의 건립을 추진할 수 있으며, 마포구를 관통하는 지하철 6호선의 마포구청역이 건립예정지로부터 300M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입지 조건은 양호함. ○ 아울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할 예정임.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
 - 조치사항 반영 완료(2013.05.24)

관련 조문	평가 기준	검토 결과	조치 사항
○ 제4조 (위원회의설치 및 구성)	○ 이해충돌 가능성	○ 이해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(제척·기피·회피) 및 위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한 사후적 통제 장치(해촉) 마련	○ 권고안 반영 : 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및 제9조(위원의 해촉) 신설 ※ 조문 신설에 따라 기존 제8조 ~ 제18조는 제10조 ~ 제20조로 조문 이동
○ 제18조 (회계관계공무원)	○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	○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대한 법률」을 추가로 규정함	○ 권고안 반영 : 제18조 제3항 조문 수정

3)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원안동의

※ 개선 사항 : 「서울특별시마포구성평등기본조례」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40%이상 여성위원으로 구성

4)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·운용에 관한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 각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·운용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금
2.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3. 일반회계 전입금
4. 그 밖의 수입금
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한다.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(이하 “중앙도서관”이라 한다) 설계비, 건축비 등
2. 중앙도서관 건립 관련 부대비용
3.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(이하 "구의원"이라 한다) 2명
2.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 소속 각 국장 및 보건소장
3.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
4. 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·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조성, 적립,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구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,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

한다.

제9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4. 제8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

제10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기금운용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.

제12조(회의록)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
1. 회의 일시 및 장소
2. 출석 위원의 직·성명
3.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

제13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4조(운영 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·운용한다.

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6조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7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금의 조성계획
2. 기금의 사용계획
3. 기금의 운용방법
4.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8조(회계관계공무원)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 부서의 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.

③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「지방재정법」 과 「회계관계직원 등의

책임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되,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.

제19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
건립기금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**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(기금의 조성)
2. 비용추계의 전제
 - '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' 건립계획 중 연도별 소요예산 및 내역
 - 비용추계기간 : 2013. 6 ~ 2016. 12. 31(43개월)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 세입	발전소기금	3,000,000	10,000,000	7,840,000	0		20,840,000
	주차장특별회계		1,863,000	3,361,000	1,862,000		7,086,000
	국·시비보조금		2,137,000	2,138,000	2,138,000		6,413,000
	특별교부금		2,781,000	2,781,000	2,781,000		8,343,000
	소계(a)	3,000,000	16,781,000	16,120,000	6,781,000		42,682,000
구분 세출	발전소기금	3,000,000	10,000,000	7,840,000	0		20,840,000
	주차장특별회계		1,863,000	3,361,000	1,862,000		7,086,000
	국·시비보조금		2,137,000	2,138,000	2,138,000		6,413,000
	특별교부금		2,781,000	2,781,000	2,781,000		8,343,000
	소계(b)	3,000,000	16,781,000	16,120,000	6,781,000		42,682,000
<input type="checkbox"/> 총 비용(a-b)		0	0	0	0		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 의존	소계	0	4,918,000	4,919,000	4,919,000		14,756,000
	국·시비보조금	0	2,137,000	2,138,000	2,138,000		6,413,000
구분 재원	지방교부세	0	0	0	0		0
	특별교부금	0	2,781,000	2,781,000	2,781,000		8,343,000
구분 자체 수입	소계		1,863,000	3,361,000	1,862,000		5,524,000
	지방세수입	0	0	0	0		0
	세외수입 등	0	0	0	0		0
	주차장특별회계		1,863,000	3,361,000	1,862,000		7,086,000
	기타(발전소기금)	3,000,000	10,000,000	7,840,000	0		20,840,000
합계		3,000,000	16,781,000	16,120,000	6,781,000		42,682,000

5. 덧붙이는 의견 : 구체적인 세입 및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.

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주민생활국 교육지원과 강경희
연락처	02-3153-8992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지방계정 투·융자 심사분석 의뢰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차후 세부사항 변경될 수 있음.

□ 규모 : 지하2/지상6층/연면적 약17,414㎡

(단위 : 천원)

구분		면적(㎡)	용도				
층별면적	지상6층	1,220	도서관(3,664㎡)				
	지상5층	1,222					
	지상4층	1,222					
	지상3층	1,250	다목적실(공연장 등), 방과후 돌봄센터, 교육비전센터, 동아리실 영어체험센터, 상담실, 세미나실 등				
	지상2층	1,250					
	지상1층	1,250					
	지하1층	5,000	주차장(7,040㎡), 임대사무실, 기계실				
	지하2층	5,000					
총면적		17,414					
총사업비 (천원)	시설비	설계비					1,629,000
		감리비					2,374,000
		공사비					37,214,000
	시설부대비						85,000
	철거비 등						1,380,000
	총계						42,682,000
	연차별 소요예산 (천원)	년도	2013	2014	2015	2016	계
총계		3,000,000	16,781,000	16,120,000	6,781,000	42,682,000	
설계비		1,620,000	9,000			1,629,000	
감리비			2,374,000			2,374,000	
공사비			14,313,000	16,120,000	6,781,000	37,214,000	
시설부대비			85,000			85,000	
철거비 등		1,380,000				1,380,000	
기존 건축물 포함	주차(최대)	186대					
	주차(법정)	79대					
	주차(일반)	107대					
예정공사비 단가		도서관 2,515천원/㎡, 교육시설 2,205천원/㎡, 주차장 1,299천원/㎡					
공사비		도서관 : 5,303㎡ × 2,515,460원 = 13,339,484천원 청소년교육센터 : 8,031㎡ × 2,205,483원 = 17,712,233천원 주차장 : 4,080㎡ × 1,299,020원 = 5,300,001천원 토공사비 : 863,000천원					